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16. 2. 3 선고 2015가단23990 판결 [건물철거 및 토지인도 등]

전 문

원고A

피고B

변론 종결 2016. 1. 20.

판결 선고 2016. 2. 3.

주 문

1. 이 사건 소 중 금전지급 청구 부분은 이를 각하한다.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N

청 구 취 지

피고는 원고에게, (1) 강릉시 C 대 255㎡(이하 '이 사건 대지'라고 한다) 지상 목조스레트지붕 단층주택 38.48㎡¹) (이하 '이 사건 주택'이라고 한다)를 철거하고, 이 사건 대지를 인도하고, (2) 금 35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분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고, (3) 2015. 9. 20.부터 이 사건 대지의 인도완료시까지 월 금 350,000원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0. 4. 2. D 소유였던 이 사건 대지를 경락받았고, 피고는 2011. 1. 20. D 소유였던 이 사건 주택에 관한 소유권을 취득하였다.

나. 이후 원고는 피고 및 D를 상대로 이 법원 2011가소3602호로 지료청구의 소송을 제기하여 2011. 9. 19. 이 법원으로부터 '피고는 원고에게, (1) 금 2,005,280원을 2011. 10. 14.까지 지급하되, 이를 이행하지 아니할 경우 미지급금에 대하여 위 지급기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고, (2) 2011. 9. 20.부터 이 사건 대지에 관한 원고의 소유권 상실일 또는 피고의 점유 종료일까지 월 금 250,660원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한다'는 취지의 화해권고결정(이하 '이 사건 화해권고결정'이라고 한다)을 발령받았고, 2011. 10. 13. 이 사건 화해권고결정은 그대로 확정되었다.

다. 그런데 원고는 다시 피고를 상대로 이 법원 2014가단8277호로 이 사건 주택의 철거 및 이 사건 대지의 인도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여 위 사건은 조정에서 회부되었고, 2015. 4. 20. 이 법원으로부터 '(1) 피고는 원고에게 2015. 5. 20.부터 이 사건 대지에 관한 원고의 소유권 상실일 또는 피고의 점유 종료일까지 월 금 350,000원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고,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포기한다'는 취지의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이하 '이 사건 강제조정결정'이라고 한다)을 발령받았으며, 2015. 5. 7. 이 사건 강제조정결정은 그대로 확정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2, 4~6호증(가지번호 포함),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및 판단

가. 원고의 주장

(1) 원고와 피고 사이에는 2011. 10. 13. 이 사건 화해권고결정이 확정됨에 따라 이 사건 대지에 관하여 월 차임을 금 250,660원으로 정한 임대차계약이 체결되었고, 이후 2015. 5. 7. 이 사건 강제조정결정이 확정됨에 따라 위 임대차계약상의 월 차임을 금 350,000원으로 증액하기로 하는 취지의 합의가 성립되었다.

(2) 그런데 피고는 2012년 11월분 및 2015년 7월분 차임을 뒤늦게 지급하였고, 이후 2015년 8월분 차임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3) 따라서 원고는 피고의 3기 이상 차임 연체를 이유로 위 임대차계약을 해지하고, 피고에 대하여 이 사건 주택의 철거 및 이 사건 대지의 인도를 구하고, 2015년 8월분 차임, 2015. 9. 20. 이후의 차임 및 차임 상당 부당이득금의 지급을 구한다.

나. 판단

(1) 이 사건 주택의 철거 및 이 사건 대지의 인도 청구 살피건대 민사조정법 제30조, 제32조에 의하여 조정담당판사가 한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은 같은 법 제34조 제4항에 정한 바와 같이 이의신청이 없거나 이의신청이 취하 또는 각하되어 확정된 때에는 당사자 사이에 다투어졌던 권리관계에 관하여 재판상의 화해와 동일한 효력이 있어 당사자 사이에 기판력이 생기는 것이다(대법원 2000. 9. 29. 선고 2000다33690 판결 등 참조). 그리고 기판력이라 함은 기판력 있는 전소판결의 소송물과 동일한 후소를 허용하지 않는 것이다(대법원 2001. 1. 16. 선고 2000다41349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의 경우, 전소인 이 법원 2014가단8277 사건에서 원고가 이 사건 주택의 철거 및 이 사건 대지의 인도 청구를 포기하는 내용의 이 사건 강제조정결정이 확정된 사실은 앞서 살펴본 바와 같다. 그러므로 기판력이 있는 이 사건 강제조정결정의 소송물인 '이 사건 주택의 철거 및 이 사건 대지의 인도 청구'와 동일한 원고의 이 부분 청구는 기판력에 저촉되어 허용될 수 없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청구는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

(2) 금전지급 청구 살피건대 확정된 승소판결에는 기판력이 있으므로 승소 확정판결을 받은 당사자가 전소의 상대방을 상대로 다시 승소 확정판결의 전소와 동일한 청구의 소를 제기하는 경우 후소는 권리보호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고 할 것인데(대법원 2006. 4. 14. 선고 2005다74764 판결 등 참조), 이는 확정된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의 소송물과 동일한 청구의 후소를 제기하는 경우에도 마찬가지라고 할 것이다.

이 사건의 경우, 전소인 이 법원 2014가단8277 사건에서 '피고는 원고에게 2015. 5. 20.부터 이 사건 대지에 관한 원고의 소유권 상실일 또는 피고의 점유 종료일까지 월 금 350,000원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한다'는 취지의 이 사건 강제조정결정이 확정된 사실은 앞서 살펴본 바와 같다.

그러므로 이 사건 강제조정결정의 소송물인 '2015. 5. 20.부터 월 금 350,000원 비율로 계산한 돈의 청구'와 동일한 원고의 이 부분 청구는 권리보호의 이익이 없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청구는 부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소 중 금전지급 청구 부분은 부적법하여 이를 각하하고, 원고의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다.

판사장세영

1) 소장의 청구취지 기재 ' 34.48m^2 '는 ' 38.48m^2 '의 오타이다.